강진군의회 공고 제2026- 호

강진군의회 기간제근로자(속기업무) 채용 공고

2026년도 강진군의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(속기업무)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
2026년 10월 27일

강 진 군 의 회 의 장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직종명	채용분야	인원	계약기간	주요업무	비고
기간제 근로자	속기업무	2명	2026.11.16. ~2026.12.18.	정례회 회의록 관련 업무 등	

2. 응시자격

○ 거 주 지 : 제한없음

※타지역 거주자의 경우 숙소 이용 가능

(이용 희망자에 한하며, 숙소 이용료 본인 부담)

○ 자격기준 : - 국가공인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

(속기협회 자격증 포함)

- 3급 이상 준비 중인 자

○ 우대(가점)사항 : - 지방의회 속기업무 경력자

-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

3. 근무조건

○ 근무시간 : 1일 8시간(09:00 ~ 18:00), 주 5일 근무

○ 근무장소 : 강진군의회

○ 보　　수 : 일당 100,000원(주휴수당 별도 지급)

4. 채용방법 및 채용일정

○ **채용방법**

1) 1차 서류전형 : 자격요건 등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

○ **채용일정**

시험구분	장　　소	일　　시	합격자 발표	비 고
1차 (서류전형)	-	2026.10.27.(화) ~ 2026.11.2.(월)	개별통보	

5. 제출서류

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E-mail접수(kdh714@korea.kr)

○ 제출서류

- 응시원서 1부(서식1)
-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(서식 2)
- 한글속기 자격증 및 속기협회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)
-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만 제출)

○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

-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,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원서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응시자 유의사항

❍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강진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❍ 응시원서가 소정의 양식이 아니거나 부착된 사진이 본인과 상이 또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합니다.

❍ 응시원서 상의 기재사항 착오·누락이나 중복지원, 자격미비자의 응시, 연락 불능, 규격 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❍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(※ 최종합격자가 신원조사에서 불합격자로 판정되거나 본인의 임용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, 면접전형의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)

❍ 문의사항은 강진군의회 의회사무과(☎061-430-3514)로 문의바랍니다.

[서식 1]

응 시 원 서(원 본)

강 진 군 의 회 귀하

본인은 2026년도 강진군의회 기간제근로자(속기업무 보조) 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.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채용 후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채용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2026년 월 일 성 명 (인)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① 주 소</td><td colspan="3" rowspan="2"></td><td>자 택 :</td><td rowspan="4">사 진
반명함판
(3.5㎝×4.5㎝)</td></tr>
<tr><td>핸드폰 :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② 최종학력</td><td>고등학교이하</td><td colspan="3">년 월
학교 (졸업,재학,수료,중퇴)</td></tr>
<tr><td>대 학 교</td><td colspan="3">년 월
학교 과(졸업,재학,수료,중퇴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③ 자 격 및
면 허</td><td>자격증명</td><td>취 득 일</td><td>자격증명</td><td>취 득 일</td><td>자격증명</td><td>취 득 일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④ 경 력</td><td>근무기간</td><td colspan="2">근무지(업무명)</td><td>근무기간</td><td colspan="2">근무지(업무명)</td></tr>
<tr><td>~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~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⑤ 병역사항</td><td colspan="3">병역필 여·부</td><td colspan="3">병 역 면 제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병역필□ 미필□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⑥ 응시분야</td><td>강진군의회
기간제근로자</td><td>⑦성 명</td><td colspan="2">(한글)
(한자)</td><td>⑧성 별</td><td>남
여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⑨생 년 월 일</td><td colspan="4">년 월 일 (만 세)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주민등록번호</td><td colspan="4">-</td></tr>
</table>

응시원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

□ 교부 및 접수처 : 강진군의회 의회사무과

□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
□ 응시원서(기재용) 작성방법 : 해당항목에 대하여 빠짐없이 작성

○ 주　소 :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고,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한다.

* 핸드폰이 없을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

○ 학　력 : 대학교이하, 대학원 졸업을 구분하여 작성하되, 전공학과와 학위명을 정확히 기재한다.(기타 재학・수료 등의 경우는 별도 구분 기재)

○ 자격 및 면허, 경력, 병역사항 : 정확히 기재한다.(증빙서류 제출)

○ 사진부착 : 1군데(3.5cm× 4.5cm 동일 원판)

□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의회 의회사무과 (☎061-430-3514)로 문의바랍니다.

[서식 2]

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

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.

☐ 개인정보 수집·이용 (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)

개인정보 항목		수집목적	보유기간
필수	성명, 생년월일, 사진, 주소, 연락처, 이메일	응시자 본인확인, 합격통지	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
선택	응시원서,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, 경력, 자격	서류전형,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	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☐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(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)

개인정보 항목	수집목적	보유기간
주민등록번호	응시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검증	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

※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

☐ 개인정보 보유 기간

· 채용자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3년, 지원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유합니다.

☐ 개인정보 3자 제공내역

· 해당사항 없음

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? 동의함(), 동의하지 않음()

● 고유식별 정보(주민등록번호) 처리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(), 동의하지 않음()

20 년 월 일

본 인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강진군의회의장 귀하

[붙임]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0. 5. 26.] [법률 제17326호, 2020. 5. 26., 타법개정]

고용노동부(고용차별개선과), 044-202-7571

제4조(기간제근로자의 사용)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(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)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5. 26.>

1.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
2. 휴직·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
3. 근로자가 학업,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
4. 「고령자고용촉진법」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5. 전문적 지식·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·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.